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2021. 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 | |
|-------------------------------------|-----------|
|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1 |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
| 1.2 계획의 개요 | 1 |
| 1.3 개발기본계획의 내용 | 2 |
| 1.4 계획의 추진경위 | 4 |
| 1.5 기대효과 | 4 |
| | |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5 |
| 2.1 평가항목의 설정 | 5 |
| 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6 |
| 2.3 대안의 설정 | 8 |
| 2.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12 |
| | |
|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13 |
|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13 |
|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16 |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충주댐 하류권역은 강원도 및 충청도의 개발 등 날로 발전하는 도시화 추세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변화와 하천 관리 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일관된 개수계획 수립 및 하천사용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임
- 본 계획은 충주댐 하류권역 내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정비 및 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작성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하천의 유지관리 등 수자원 종합 개발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행령[별표2]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에 해당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개발기본계획)

| 구 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요청시기 |
|----------------|------------------------------------|---|
|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3)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계획하천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방하천 4개소, 총 연장 49.60km)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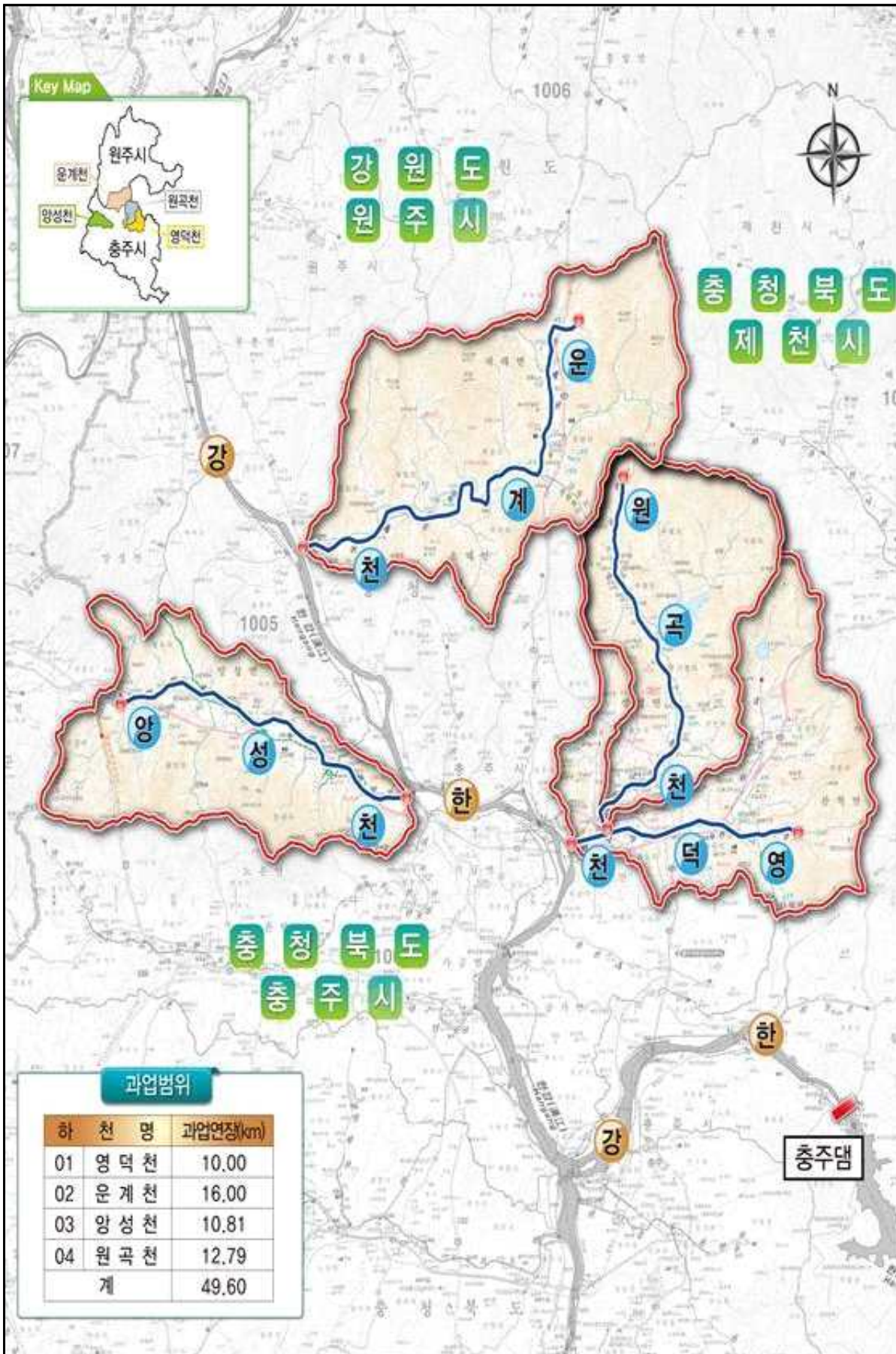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제2호

1.3 개발기본계획의 내용

- 가. 사업명 :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 나.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다.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라. 협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 마. 위치 및 사업계획

<표 1.3-1> 계획의 규모

| 번호 | 하천명 | 하천 등급 | 시 점 | 종 점 | 하천연장 (km) |
|----|-----|----------|---------------------|-----------------------------|--------------|
| 1 | 영덕천 | 지방 하천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남한강(국가) 합류점 | 10.00 |
| 2 | 운계천 | 지방 하천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남한강(국가) 합류점 | 16.00 |
| 3 | 양성천 | 지방 하천 |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남한강(국가) 합류점 | 10.81 |
| 4 | 원곡천 | 지방 하천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원곡리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영덕천(지방) 합류점 | 12.79 |
| 계 | | 지방하천 4개소 | | | 49.60 |



(그림 1.3-1) 계획지구 위치도

1.4 계획의 추진경위

가. 추진경위

- 2020년 11월 :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21년 01월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서면심의)
- 2021년 03월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나. 향후 추진경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내용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요청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1.5 기대효과

- 하천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을 조성
-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등 수립
- 수리·수문 특성변화와 하천 관리운영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 주변 하천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의 개선을 도모
- 하천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극대화를 위한 이·치수, 환경측면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 기본방향 수립
-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 조성
- 하천변과 유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 및 자연보전, 친수기능을 고려한 공간기능 설정으로 지역주민 생활 개선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기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계획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영향 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함

<표 2.1-1> 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선정결과

| 구분 | | 선정사유 | 비고 |
|---------------------|--------------------|---|-------------|
| 계획의 적정성 | | | -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관계법상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 | - |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 계획수립, 하천정비,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 |
| 입지의 타당성 | | | - |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 시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 예상 ○ 계획시행 시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및 다양성의 변화 예상 ○ 각종 보호생물종의 영향검토 | - |
|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 지형변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 - |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계획시행으로 계획하천 및 주변 경관 영향 예상 | - |
| | 수환경의 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부유토사, 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치수 안전성 부합여부 검토 | 수질 수리·수문 |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기상현황 파악 후 기초자료 활용 | 기상 |
| | | ○ 계획시행으로 인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비산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방안 검토 | 대기질 |
| | | ○ 건설장비 가동, 차량운행 시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 소음·진동 |
| |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 ○ 계획시행 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현황 및 영향여부 검토 | 타 항목 중복 |
|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계획시행 시 폐기물 발생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 - |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계획시행 시 토지이용변화 예상 | - |

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 현황은 문헌자료와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하천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 본 계획에 따른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구 분 | | 조사계획 | 예측 및 평가방법 |
|---------------------|-----------------------|--|---|
| 계획의 적정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계획과 조화성 검토,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
| 자연 환경 의 보전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자연(식생현황 및 동·식물 서식환경 등) 및 자연환경자산 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150m 이내) ○ 조사방법 : 자료(광역) 및 현지조사 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문헌자료, 현지조사 결과들 토대로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
|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특이지형 등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에 따른 하천 지형변화 검토 |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주변 경관 현황 및 경관자원 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검토 ○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 여부 검토 |
| | 수환경의 보전 | 수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현황, 오염원 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인근 수계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조사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수질 : 17지점 × 3회 - 하천저질 : 17지점 × 1회 |
| 수리· 수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하천의 수리·수문 여건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인근 수계 ○ 조사방법 :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 여건 변화 검토 |

<표 2.2-1> 계 속

| 구 분 | | 조사계획 | 예측 및 평가방법 |
|-----------------------------|----------------|--|--|
| 생활 환경 의 안정성 | 기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계획하천 및 주변기상 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연보 등 자료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 |
| | 대기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원 및 정온시설 분포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300m 이내)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원 및 정온지역 현황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 | 소음·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주변 소음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정온시설 분포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300m 이내)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소음현황 및 주요발생원, 정온시설 현황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 시 폐기물 발생 검토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
|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 검토 |

나.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하천의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2.2-2>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

|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지점 | 조사횟수 | 수량 |
|------|--|------|------|----|
| 하천수질 | ○ pH, BOD, COD, DO, SS, TOC, T-N, T-P,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총대장균군, PCE, 수온, 유량, 사염화탄소 등 22개 항목 | 17지점 | 3회 | 51 |
| 하천저질 | ○ COD, T-N, T-P, Cd, Pb, As, Ni, Hg, Cr ⁶⁺ , Cu, Zn, 강열감량, 입도분석 등 13개 항목 | 17지점 | 1회 | 17 |

2.3 대안의 설정

2.3.1 대안의 종류

가.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본 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에 위치한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검토함
- 대안선정은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및 수단·방법을 선정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함

<표 2.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대안종류 | 대안 선정방법 | 선정 |
|-------|---|----|
| 계획 비교 |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Action)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 |
| 수단·방법 |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
| 수요·공급 |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
| 입 지 |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 |
| 시기·순서 |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
| 기 타 |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

나. 대안의 미선정 사유

- 본 하천기본계획의 특성상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에 대한 대안선정은 제외하였으며, 미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 2.3-2> 대안의 미선정 사유

| 대안종류 | 선정여부 | 미선정 사유 |
|-------|------|--|
| 수요·공급 | 미선정 | ○ 하천기본계획과 재해예방사업으로 “수요·공급” 대안은 불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 입지 | 미선정 | ○ 하천기본계획은 기 조성된 하천구역에 재해위험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입지” 대안은 불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 시기·순서 | 미선정 | ○ 하천기본계획 검토 후 홍수 등 재해위험의 발생이 높은 구역을 우선 순위로 정해 하천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시기·순서” 대안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기타 | 미선정 | ○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없음 |

2.3.2 대안의 설정

가. 계획비교

-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3-3>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

| 구 분 | 행정계획 수립 시(Action) | 행정계획 미수립 시(No Action) |
|-----------------------|---|--|
| 토지이용 측면 | ○ 계획시행 후 하천점용허가 재검토 등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상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효율성 저하(토지이용계획상 변화 없음) |
| 수자원 이용측면 | ○ 수자원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증대 | ○ 계획되지 않는 하천계획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이용 |
|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 계획하천 일부구간에 생태자연도 1등급 등이 위치하나,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 등으로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 생태계훼손 가능성 | ○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생태계훼손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 ○ 생태계변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 훼손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 지형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 ○ 계획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지역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됨 | ○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 침수 등이 예상됨 |
| 쾌적한 생활 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 계획시행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 생활환경 변화가 없음(현 상태가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공사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나, 주변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 경관상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 계획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환경기준을 상회할 수 있으나, 공사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 대안선정 | ○ 홍수피해 예방 및 감소, 수자원 확보 및 하천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인근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Action)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 |
| | ○ | - |

나. 수단·방법

- 수단·방법의 대안으로 홍수방어능력 향상 및 수질개선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음
-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이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재해예방 및 양호한 하천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표 2.3-4> 수단·방법(이·치수 능력 향상을 위한 대안)에 따른 대안별 비교, 분석

| 대안 | 1안 (하천정비) | 2안 (홍수조절지 조성) |
|------|--|---|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주변지역은 산지, 농경지 및 주거지 등이 인접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 제방, 보 등이 노후화되어 구조물의 정비가 필요함 ○ 홍수조절 능력 및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계획이 필요함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호안 정비로 홍수에 대비함 ○ 하천 내 시설물 개선을 통해 하천수 이용을 도모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시 발생하는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홍수조절지를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홍수에 대비 |
| 장·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편입면적이 거의 없어 계획추진이 용이하고, 주변지역의 생태적 여건 변화가 적음 ○ 종합적인 하천정비로 홍수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편입면적이 필요함 ○ 유지관리가 필요함 ○ 홍수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 |
| 대안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주변지역은 산지, 농경지 및 주거지 등이 인접하고 있어,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여건변화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함 ○ 계획하천 주변지역의 경우 하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용 빈도가 높지 않고, 홍수조절지 등의 추가개발 및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며, 농경지 편입 등에 의한 계획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안과 같은 홍수저감대책은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1안의 경우 기존 하천시설물의 보강으로 하천 이·치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며,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이·치수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1안으로 선정함 | |
| | ○ | - |

<표 2.3-5> 수단·방법(하천수질 개선방법에 따른 대안)에 따른 대안별 비교, 분석

| 대안 | 1안 (친환경적 호안조성) | 2안 (직접정화처리시설 설치) | 3안 (하천변 인공습지 설치) |
|------|---|---|--|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주변지역은 산지, 농경지 및 주거지 등이 인접하고 있으며, 농경지 및 취락지역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양호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시설 보강으로 재해에 대한 대비가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변에 하천 직접정화처리시설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별 인공습지 설치 |
| 사진예시 |  |  |  |
| 장·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생태환경을 유지하여 자연정화 능력 향상 ○ 수질개선과 생물서식 공간 제공 ○ 추가 편입면적이 거의 없고 생태적 여건 변화가 적음 ○ 경관상 양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수 직접정화를 통한 가시적인 수질향상 효과 ○ 추가 편입면적이 필요함 ○ 시설관리·운영비 소요 ○ 주로 하수도정비 및 배출수 규제에 의해서도 충분한 개선효과를 인지 못하는 지역에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자정능력을 최대한 활용 ○ 수질개선과 동시에 생물서식 공간 제공 ○ 체류시간이 필요하므로 대안1, 2와 비교 시 편입면적이 가장 많이 필요 ○ 추가토지매입 필요 ○ 시설관리·운영비 소요 |
| 대안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하천의 경우 유역주변이 대부분 산림지역, 농경지 및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리적 조건, 생태계 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검토함 ○ 계획하천 주변지역 주 오염원은 농경지 및 취락지역으로 계획하천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2안(직접정화처리시설 설치) 및 3안(하천변 인공습지 설치)과 같은 수질개선대책은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1안(친환경적 호안조성)의 경우 기존 하천시설물을 보강하고, 기존수변 식생대를 이용·조성하여 자연정화능력을 향상시키고, 하천생태환경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며, 안정적인 수질개선 및 양호한 생태환경 조성이 가능한 1안(친환경적 호안조성)으로 선정함 | | |
| | ○ | - | - |

2.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의견수렴 개요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표 2.4-1> 관계기관 주민 의견수렴 방법

| 의견수렴 계획 | 의견수렴 근거 | 수 렴 방 법 | 대 상 범 위 |
|---------------|----------------------------|-------------------------|--------------|
|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협의회 위원 |
|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 |

나.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평가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평가 항목·범위·방법·대안 등을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 계획지구가 속한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홈페이지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 일간 신문
 -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 일간 신문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계획지구가 속한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관계부서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20~40일)하여 주민 열람 실시
 - 공람장소는 지자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초안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
 - 설명회 장소는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와 협의하여 결정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 관계기관 의견수렴
 -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원주지방환경청 등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내용

- 심의기간 : 2021년 01월 18일 ~ 2021년 03월 03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 협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0명

<표 3.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여위원

| 구 분 | 소 속 / 부 서 | | 직 위 (직급) | 성 명 | |
|-----|------------------|--------------|-------------|-------|-------|
| 위원장 |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 | 국 장 | 이 * * | |
| 위 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 | 과 장 | 윤 * * | |
| | 원주지방환경청(환경평가과) | | 과 장 | 김 * * | |
| | 민간전문가(한경대학교) | | 교 수 | 안 * * | |
| | 민간전문가(동성엔지니어링) | | 상 무 | 신 * * | |
| | 지방 자치 단체 | 원주시청(환경과) | | 과 장 | 신 * * |
| | | 충주시청(환경수자원과) | | 과 장 | 김 * * |
| | 원주시 주민대표 | | 회 장 | 류 * * | |
| | 충주시 주민대표 | | 교 수 | 이 * * | |
| | 시민단체 | | 대 표 | 이 * * | |



국토교통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협의회 개최 알림(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서는 평가준비서에 대하여 검토 후 심의 결과 통보서(붙임양식)를 '21.03.03(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개요 】

- 가. 건 명 :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 나. 인 원 : 위원장 등 10명
 - 다. 일 정 : 2021. 01. 18. ~ 2021. 03. 03.
 - * 평가준비서 배포 및 사전설명은 해당 용역을 수행중인 용역사에서 방문 설명
 -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마. 심의안건 :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준비서 심의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계획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각 1부(별송). 끝.

(그림 3.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시행문서 사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 충주시장(환경수자원과장), 원주시장(환경과장), (주)동성엔지니어링 신지영
위원님 귀하, 환경대학교 안태진 위원님 귀하, 원주시 주민대표 귀래면 이장협의회 류재철 위원님 귀하, 충주
시 주민대표 한국교통대학교 이원호 위원님 귀하, 원주녹색연합 이차복 위원님 귀하

| | | | | | | | |
|-----|-----|-------|-----|--------|-----|------|---------------------|
| 주무관 | 신현태 | 사무관대우 | 김태웅 | 하천계획과장 | 윤경묵 | 하천국장 | 전결2021.1.12. 이강녕 |
|-----|-----|-------|-----|--------|-----|------|---------------------|

협조자

시행 하천계획과-133 접수

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 <http://www.molit.go.kr/wrocm>

전화번호 033-769-5684 팩스번호 033-742-0772 / tlsgusxo14@molit.go.kr / 비공개(6)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그림 3.1-1) 계 속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의견

- 현재 하천이용형태, 장래 이용계획, 치수 및 이수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자연환경보전관련 용도로 지정된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수변지역, 습지 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이나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생태자연도1등급지, 식생보전등급 2·3등급지 등)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조사·예측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인접한 구간은 이·치수의 안정성 범위내 정비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안 비교·검토하여야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보전 : 다양한 하천생태계 환경 (동식물상, 보전지역, 칠새도래지 서식지, 습지 및 합류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치수시설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절한 저감 및 보전대책 (출연중 보호, 어도설치, 식물상변화에 대한 대책, 노거수 및 보호수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야 함
 - 수리수문 : 축제 등 개수계획과 호안정비에 대해서는 홍수이력 등 계획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홍수대비 과도한 구조물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 수렴 시 대상 지역 주민들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상세히 설명하여야함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
-주민 등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별도의견 없음

2021. 03. 02.

심의위원 윤 (인)

나. 원주지방환경청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사 업 개 요

- 위치 및 규모(총 4개 하천, 49.6km)
 - 영덕천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엄정면 일원(10.0km)
 - 운계천 : 강원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부론면 일원(16.0km)
 - 양성천 : 충북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양성면 일원(10.8km)
 - 원곡천 : 충북 충주시 엄정면 원곡리~엄정면 일원(12.8km)
- 승인기관(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1 총 괄

- 본 협의회는 영덕천 외 3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하천의 이·치수적 측면 뿐만 아니라 보전·복원 등 자연친화적인 측면에서의 하천정비 및 관리 방향이 설정·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세부 심의의견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해당 하천의 하류부 합류 하천, 유역범위 내 지류 소하천 등 관련 수계 현황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자연 생태 및 생활환경 현황, 환경영향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설정하여야 함.
 - 하류 합류점, 지류 소하천과의 연계성(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 설정
 -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대상지역 설정은 계획이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
- 대상지역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면에 표기하여야 함.

나. 토지이용구상안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의 이·치수적 측면 및 자연·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장구하여야 함
-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 통과·인접구간 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 구간은 자연성을 복원하는 방안 강구
- 하천 본래의 유로, 하폭 및 하상을 최대한 보전하고, 수리·수문 분석 및 제내지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 수립
- 야생동물의 횡적·종적 연결성을 확보할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 (호안 환경사 조성 및 친환경적 공법 적용, 제방 투수성 포장, 생태어도 설치 등)
-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하천변 식생대 조성, 하천정화 활동 등) 강구

다. 대안

- 하천기본계획의 목적, 기대효과, 하천별 유역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계획·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 및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하천 설계빈도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
- 하천 내 생태·경관 현황, 하천변 시설물 설치 및 주민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지구지정의 대안 설정·제시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하천공간관리와 관련하여 기 수립 하천기본계획과 금회 수립하는 계획을 비교·제시하고, 친수구역의 경우 지정사유 및 근거자료 제시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라.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재해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직전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금회 수립 내용을 비교 검토·제시하여야 함.
 - 기 수립된 각종 계획과 금회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을 비교·검토 가능하도록 현황 및 변경사항(하천 유로 및 폭, 시설물 설치내용 등)을 도표로 제시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토지이용, 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수질, 수리·수문)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환경 관련 지역·지구·구역 현황, 해당 지역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각종 문헌 등 검토
 - 하천 유로의 인위적 변경, 축제·보축·하상 준설 등으로 인한 수생태계 훼손 및 수질 악화, 경관 저해 등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 친수시설 설치, 제방 및 독마루 조성·확장 등 하천 주변의 오염부하량 증가에 따른 수질보전 대책
 - 해당 하천의 유역 특성,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등을 고려한 수리·수문 분석
 - 수리·수문 항목 검토 시 기존 시설물(제방, 배수시설, 교량, 보, 낙차공 등)의 이·치수능력(과·부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 및 시설물 설치·정비계획에 대한 타당성 근거자료 제시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기존 자료 및 문헌 조사의 경우 대상 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를 활용하되, 출처를 명확히 제시
 - * 해당지역에 5년 이내의 최신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확대
- 현지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갈수기·평수기, 생육이 왕성한 시기, 육수 생물 산란기 등 고려하여 조사시기 선정)

마. 기 타

- 평가서에 제시하는 각종 도면 등의 자료는 육안 판독이 가능하고 계획 수립 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평가서 작성 등의 참여 기술인력 현황(하도급 포함)은 실제 참여하는 기술인력과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제시하여야 함.

2021. 1. 18.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김

다. 민간전문가(한경대학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 의견

- 충주댐 하류권역 영덕천, 운계천, 양성천 및 원곡천 하천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중점평가항목에 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에 관한 물량이 명시되어야 하고,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각 중점 평가항목에 관한 현황,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금회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는 향후 하천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함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영덕천, 운계천, 양성천 및 원곡천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행정계획 미수립은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행정계획 수립은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수립임. 행정계획 수립과 같은 대안으로 수립됨에 따라 향후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생태조사는 종단방향으로 각 하천의 상류 및 하류 경계의 일정 범위 (150m) 추가하고, 횡단방향도 하천부지 경계를 일정 범위(150m)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동식물상 조사는 4계절을 반영하는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 수질조사는 각 하천의 갈수량 및 저수량이 포함되게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시 하천유량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수질조사는 수질오염총량 및 유역별 오염부하량 관련 검토가 가능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함.
- 강우직전 및 직후 하천수의 SS(부유물 농도)를 측정하여, 제방보축이나 하도정비 공사시 예상되는 토사유출농도 모의, 저감대책에 참조할 필요가 있음.
- 하도내 보, 낙차공 등 횡단시설물의 개량에 따른 하도내 물리적, 환경적 등의 변화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봄철 미세먼지 기간은 구별하여 대기질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대기질(소음, 진동)은 주민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각 지역에서의 고른 추천을 통하는 등, 전체 지역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방안이 필요함.

6.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 심의 의견

2021. 2. 1.

심의위원 안



(인)

라. 민간전문가(동성엔지니어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충주댐 하류권역 지방하천 4개소의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포함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과도한 사업계획 수립(축제, 보, 낙차공 설치 등)은 지양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경우 개발계획을 최소화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하천 일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는 바,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조사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행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계획하천이 합류되는 수계가 남한강(국가하천), 수변구역인 점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분류군별 적정 조사지점, 조사시기를 선정하여 제시
- 법적보호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수질)

- 공사시 및 운영시 하류수계(수변구역)에 수질영향 최소화할 수 있는 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제시

○ (수리·수문)

-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이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 설계빈도 적용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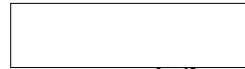

○ 의견없음

행정 사항(승인기관, 사업자)

○ 충분한 홍보로 주민수용성 확보하고 의견 적극 검토 반영

2020. 2. 17.

심의위원 신

마. 원주시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의견

- 동 계획은 원주시, 충주시 일대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치수 목적 뿐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래의 자연생태계 보존·유지 및 인근수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별도의견 없음

2. 대안의 설정

- 별도의견 없음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하천수계 주변 동·식물 등 생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를 통하여 4계절 이상을 조사하고 공사로 인한 하류부 수질영향 및 수문의 변화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수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어류, 양서·파충류 등 수서생물의 서식지조사와 사업시행 시 부유토사 비점오염원 발생으로 인한 하상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따른 보전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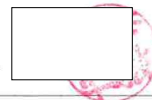
- 별도의견 없음

5. 기타

- 하천의 본래 목적인 치수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시 지나친 절토 등으로 지형훼손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원주시 야생생물보호구역 일부[호저면 주산리 391-10(3,428㎡)]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해제[원주시 고시 제2020-166호, 2020.05.15.]된 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2021. 3. 2.

심의위원 원주시청 환경과장 신



바. 충주시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 의견

- 충주댐 하류권역 내 양성천 등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의 이치수 측면과 더불어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심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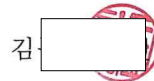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설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해야 함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최근의 국지성 호우로 인한 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 제시하여야 하며
 - 사업구간내 하중도 및 습지 등에 대한 동식물 등 생물상 조사를 통해 서식 현황을 제시하고 보전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
 - 하천 시설물 도입시에는 인공 구조물 도입을 최소화하고 자연형 하천 등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평가서 작성시에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하여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제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함
 - 동 구간내 우리시에서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금회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행정 사항

- 우리시는 2021. 1.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중으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사업구간인 한강D 단위유역 말단의 목표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021. 3. .

심의위원 김



사. 원주시 주민대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총괄 의견

- 하천 오염으로 생태계 파괴 악취 주민 생활불편 하천 정비사업 및 정화사업 필요.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수계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광역 정화조 설치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하천권 주변 차수, 오배수 처리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광역 정화조 설치 하천 오염 방지 체계적 정비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취수 양전 과로 생략. 수질 환경은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2021. 3. 2.

심의위원 

아. 충주시 주민대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 의견

-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안정성 검토를 통해 동·식물상 등 및 정온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계획시행으로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변하천관리, 이용, 보존, 개발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수환경(수질, 수리.수문)은 계획구간 배수유역으로 설정하고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조사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하천기본계획 수립 계획하천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안을 설정하고 비교·검토함이 타당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사업지구 인근 정온시설 등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300m 이상)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구간 배수유역 내 수질오염원 및 향후 계획 등을 검토하여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범정보호종 동·식물 분야의 면밀한 조사와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및 보전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1/5,000, 1/25,000 지형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환경정보 제시
 -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계획구간의 경우,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에 대한 사업홍보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실시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하천제해예방사업 계획수립시 이·치수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에 대하여 자연생태 보전 또는 생태적 복원 등을 충분히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1. 1 . 27.

심의위원 이



자. 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충주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총괄 의견

- 당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재해예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나, 계획시행으로 하천내 서식하는 동식물의 종 다양성과 하천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방법이 계획수립시 검토·반영되어야 할 것임.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하천과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시 평가항목별로 주변지역의 범위를 좀더 구체화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양호한 하천환경을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적 호안조성 방식(1안)을 선정한 것은 유지관리와 효용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친환경적 호안조성시 하천정화능력 향상과 수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법이 제시되어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계획 시행시 하천내 동식물의 서식지와 종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계획 시행으로 하천지형변화가 예상되므로 주요 자연하천지형의 보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제시되어야 함
 -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동·식물 분야의 면밀한 조사와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및 보전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하고, 참석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총주담 하류권역의 계획하천들은 이치수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의 자연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고 양호한 수생태계의 보전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중점을 두고 평가에도 반영되어야 함.

2021. 2 . 28 .

심의위원 이

